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74 발 의 년 월 일: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:최기찬, 경기문, 김기명

자: 최기찬, 경기문, 김기덕, 김성준, 김용일, 김원태, 김춘곤, 김형재, 박승진, 박영한, 박칠성, 박환희, 서준오, 신복자, 이영실, 이종태, 임만균, 전병주, 최민규, 최재란, 홍국표 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○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(안 제4조의5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「모자보건법」

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5(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)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의5(공공산후조리원 설치・
	운영)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
	보호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
	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「모자
	보건법」 제15조의17에 따른 공
	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
	<u>수 있다.</u>